

가시화된 OECD 신고용전략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994년 고용전략(1994 Jobs Strategies)의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OECD는 2006년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고용작업반(고용노동사회위원회 Working Party 5)과 경제작업반(경제정책위원회 Working Party 1) 합동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4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10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올해 6월 15일과 16일 양일간 OECD 신고용전략을 확정하기 위하여 캐나다에서 개최될 고용-경제장관 정상포럼(the High High-level Forum)에 앞서 개최된 이번 정기총회에서의 핵심 의제는 각국 대표단 및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와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 연석회의를 통해 「일자리와 근로소득 제고: OECD 고용전략 재검토로부터의 정책적 교훈(Boosting Jobs and Incomes: Policy Lessons from Re-Assessing the OECD Jobs Strategies)」에 포함된 OECD 신고용전략의 초안을 검토하는 한편,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의 2007~2008 전략과제 및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었다.

처음으로 공개된 OECD 신고용전략은 ①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의 설정, ② 노동시장 참가와 일자리탐색의 애로요인 제거, ③ 노동수요를 저해하는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에서의 걸림돌 제거, 그리고 ④ 노동력의 숙련과 역량(competences) 개발 촉진 등 4개의 기둥(4 Pillars)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가시화된 OECD 신고용전략의 세부 내용을 소개한다.

A.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의 설정

A.1 거시경제정책은 잠재적으로 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저금리를 유지하고 투자를 장려하는 한편, 노동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가격안정성과 건전재정을 목표로 해야 한다.

A.2 거시경제정책은 부정적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실업 상승이 영구화될 위험을 낮추는 한편, 구조개혁의 혜택이 앞당겨 실현되는 것을 보장하도록 경제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 ① 통화정책은 중기 가격안정을 추구하되, 이러한 목표하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을 안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 ② 재정정책은 건전재정의 회복 및 유지에 목표를 둬으로써 자동안정장치가 작동되도록 하고, 요구되고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재량적 정책수단(discretionary policy)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B. 노동시장 참가와 일자리탐색의 애로요인 제거

이에는 ① 잘 설계된(well-designed) 실업급여체제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실시(B1, B2, 그리고 B3), ② 일자리 지향적인(work-oriented) 기타 미취업 관련 사회급부(B.4 와 B.5), ③ 가족친화적(family-friendly) 제도적 장치의 촉진(B.6), 그리고 ④ 일을 통한 복지를 위한 조세체계 및 이전소득 프로그램의 조정(B.7)이 포함되어 있다.

B.1 실업급여 대체율과 수급기간은, 다른 사회부조와 마찬가지로, 일자리탐색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고, 특히 급여수준이 관대한 곳에서는 적절한 급부의 희생을 포함하는 잘 설계된 활성화정책(activation policies)의 일환으로 강화된 근로가능성기준(재가-availability criteria)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B.2 고용서비스는 실업자들에게 심층면접과 일자리탐색 지원을 제공하되 미취업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강제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의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B.3 고용서비스의 성과는 일자리 알선율과 재취업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성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은 없애는 한편 일자리탐색자의 요구(needs)와 노동시장에 부합하도록 복합적인 프로그램이 조정되어야 한다.

B.4 일할 능력을 가진 자들이 병과 장애급여 체계를 통해 노동시장을 떠나지 않도록 정책의 문을 단단히 감시하는 수단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장애급여 등을 받는 자들의 일할 능력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다소간의 일할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노동시장 지향적인 재할이 제공되어야 하는 한편 충분한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일자리 복귀를 위한 일자리탐색 지원과 금전적 유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B.5 조기퇴직체제를 폐지하는 한편 연금체계를 조기 노동시장 퇴장 유인을 제거하도록 개혁하고, 법정 퇴직조항은 제거하여야 한다.

B.6 육아지원을 포함한 가족친화적 정책들과 일과 가족생활을 조화시키는 것을 돕는 근로시간 조정을 통하여 가사의무라는 부담을 진 자들을 고용하는 데 장벽을 없애야만 한다.

B.7 고소득자들에 대한 지나친 조세 왜곡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조세-사회부조수급 개혁과 일을 통한 복지를 위한 재직자 급여(in-work benefits)를 포함하여 고용이 사회부조수급보다 매력적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C. 노동수요를 저해하는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에서의 걸림돌 제거

이에는 ① 임금과 노동비용을 노동시장에 일임(C.1, C.2, 그리고 C.3), ② 상품시장의 경쟁성 고양(C.4 와 C.5), ③ 근로시간 유연성의 강화(C.6), ④ 고용보호법제가 노동시장의 동태성에 도움이 되고 근로자들에게는 안정성을 제공하도록 할 것(C.7.과 C.8), 그리고 ⑤ 공식 고용으로 전환을 촉진(C.9)함 등이 포함되어 있다.

- C.1 최저 임금수준이 저생산성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을 유의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C.2 세율이 높고 예산 상황이 허락하는 곳에서는 근로소득세를,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에, 감축하여야 하며, 건강보험료 역시 통제가능한 수준에 있어야 한다.
- C.3 업종별 단체임금교섭(sectoral collective agreements)이 광범위하게 실시되는 국가에서는 개별 기업들이 근로자-사용자 간 협약을 통해 고위 협약으로부터 벗어날(opt-out)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도입되거나 강화되어야 하며, 단체교섭에서 '경영상 외연(administrative extension)'이 개혁되어야 한다.
- C.4 신규기업의 진출을 막는 법적 장애가 경쟁이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제거되어야 하며 기업착수 과정에서 경영 부담이 감소되어야 하는 한편, 개방된 국제무역과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투자로 이행하여야 한다.
- C.5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활동에 대한 국가규제를 감축하여야 한다.
- C.6 사용자-근로자 협약을 통한 유연한 근로시간의 출현을 방해하는 노동법제에서의 걸림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조세와 사회보장제도는 일과 가정의 조화와 근로-은퇴 전환과정의 유연성을 돕는 파트타임근로나 그 외 유연한 근로시간 협약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 C.7 지나치게 경직적인 고용보호법제는 개혁되어야 하며, 부당해고(unfair dismissal)(특히 성, 연령, 인종을 이유로 한)를 제재하는 조항은 설정하되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에 대한 제약은 줄이고, 해고비용과 행정적 절차는 보다 예측가능하게 만들어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해고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돕도록 합리적인 해고예고기간(dismissal notice periods)을 설정하여야 한다.
- C.8 일부 국가에서는 기간제와 임시근로 계약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나 정규직 계약에 대한 규제를 그대로 놓아둔다면 이는 곧 노동시장 이중성을 심화시킬 것이며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성과를 손상시킬 것이다.
- C.9 저임근로자(특히 영세사업체)에 대해 낮은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식 고용으로 전환을 장려하고, 기업들이 공식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쉽도록 노동규제와 사업등록요건을 개혁하고, 사

회적 보호와 근로 간 밀접한 관련성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그들의 일자리를 선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D. 노동력의 숙련과 역량(competences) 개발 촉진

D.1 정부는, 국가별 관행에 따라 정의되는 사회적 파트너(social partners)와 협력하여, 노동력의 숙련수준을 제고하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 ① 성인이 직업훈련과 근로경험을 통해 획득하는 새로운 역량을 인정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 ② 훈련공급자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시장기제의 사용을 통하여 훈련공급의 수준을 제고하도록 장려하고,
- ③ 취약집단(disadvantaged groups)에게 유효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민간 주체로부터의 공동 재원조성을 포함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지원하고,
- ④ 연령제한을 완화하고 유연한 보상 계약을 가능케 하여 도제계약의 범위를 넓히고, 그리고
- ⑤ 고용프로그램이 취약집단의 특유한 요구(needs)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실시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D.2 교육-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핵심적으로

- ① 직업교육프로그램의 확충과 일반 정규교육과 직업교육 간 연계체계의 강화 및 경력지도(career guidance)의 개선을 통하여 교육으로부터의 조기 탈락을 줄이는 한편
- ② 도제제도의 개선이나 더 많은 비공식 채널을 통하여 교육과 일의 조화를 도와야 한다.